

· 작성부서	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, 청산결제부		
· 담당자	(파생상품제도부) 팀장 : 김배용(☎051-662-2791) 팀원 : 서재욱(☎051-662-2799) 팀장 : 한륜석(☎051-662-2801) 팀원 : 서창원(☎051-662-2806) (청산결제부) 팀장 : 조윤희(☎051-662-2821) 팀원 : 김병현(☎051-662-2826)		
· 배포일	2013. 7. 8(월)	· 배포부서	홍보부 (☎ 3774-4081~4085)

※ 이 자료는 7.9(화)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강화 등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

1 개요

□ 한국거래소는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강화, 증거금제도 개선 등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, 달러옵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투자자편의 증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

-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('13.7.3 금융위 승인)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'13.9.30일(월)*부터 시행할 예정

*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자율적 신고는 '13.7.9(화)부터 시행 예정

2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	시행 시기
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	- 알고리즘거래계좌 사전 신고 의무화	'13.9.30
	- 거래소의 주문 일괄취소기능(Kill Switch) 도입	'14.2월
	- 과다호가 접수제한	'14.2월
	- 누적호가수량한도 설정	'13.9.30
	- 과다호가부담금 부과	'13.9.30
증거금제도 개선	- 장중 위험노출액한도 축소	'13.9.30
	-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	'14.5월
	- 마진콜 제도 정비	'13.9.30
미국달러옵션 제도개선	- 결제방법 변경 : 실물인수도결제 → 현금결제	'13.9.30
	- 결제기간 단축 및 최종거래일 거래시간 연장	

가.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

①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

- 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계좌 및 위험관리·비상연락에 필요한 정보* 등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

* 투자자 계좌번호, 회원사 담당자 연락처, 전용프로세스 ID 등

② 거래소의 주문 일괄취소기능 도입

- 알고리즘거래 계좌의 주문 착오시 추가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일괄취소기능(Kill Switch) 도입

③ 과다호가 접수제한

-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폭주로 거래소의 시스템의 장애 또는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과다호가 접수 거부 등 알고리즘 계좌의 사고 발생 전후에 단계별 위험 관리

④ 누적호가수량한도 설정

- 주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호가가 반복 제출되는 사고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잠재적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좌별 누적호가수량 한도*를 설정

* 알고리즘거래계좌인 경우 상승/하락방향별 7,500델타, 알고리즘계좌가 아닌 경우 상승/하락방향별 15,000델타

⑤ 과다호가부담금 부과

- 체결율이 낮고 호가건수가 과도한 계좌에 대해 거래소가 과다호가 부담금*을 부과하여 과다호가 제출 억제 및 시장의 효율성 도모

* 코스피200선물·옵션 거래 계좌에 대하여 기준 초과시 일 100만원(월2회 면제가능)

나.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증거금 관리 강화

① 장중 위험노출액한도 축소

- 알고리즘거래 사고의 실질적인 위험 관리를 위하여 장중 위험노출액한도를 현행 예탁총액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하고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회원이 지체없이 주문 접수 거부

② 장중 추가증거금 부과

- 장중 시장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적기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중추가증거금* 제도 도입**

* 현재는 증거금을 미결제약정에 대해 장 종료후 산출하여 익일에 부과

** 장중추가증거금 제도는 국제기구(BIS CPSS-IOSCO)의 권고사항(PFMI)으로, 미국 CME, 유럽 Eurex, 일본 JSCC, 영국 LCH 등 주요 청산기관이 운영중

③ 마진콜 제도 정비

- 기관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후증거금과 유지증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증거금 제도를 사후증거금으로 일원화

다. 미국달러옵션시장 제도 개선

① 결제방법 변경 : 실물인수도결제 → 현금결제

- 결제방식을 현금결제로 변경하여 투자자 편의성 제고
-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미국달러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여 시장접근성을 높임

② 결제기간 단축 및 최종거래일 거래시간 연장

- 현금결제로 변경함에 따라 실물 확보부담이 경감된 만큼 최종 결제일을 최종거래일 다음 거래일로 단축(현행 T+2일 → T+1일)
-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도 현행 11:30분에서 15시로 연장

※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krx.co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